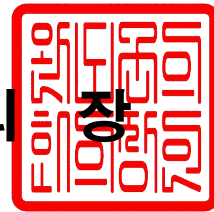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
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5년 1월 20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
조례안

2. 발 의 자 : 지 민 의원

3. 제정이유

-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
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
시키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군수 및 군민의 책무(안 제2조, 안 제3조)
- 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교육 및 홍보 등(안 제5조)
- 장려금·보상금 등의 지급(안 제6조)

5. 관련법령 :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

6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5. 1. 20. ~ 2025. 1. 25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5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「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」의 조례안
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일 일 년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군수의 책무) ①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·조정한다.

1.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
2.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·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
3.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, 재활용 사업의 육성·지원
5.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

제3조(군민의 책무) 군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·성질별·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,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,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군수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년도 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
2.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
3.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
4.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
5.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
6. 폐기물의 감량,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교육 및 홍보 등) ①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·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장려금·보상금 등의 지급)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·단체,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·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

관계 법령 발췌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·자연적·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국민의 책무)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,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,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(耐久年限)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,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

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, 제출 및 승인·변경승인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